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찾기 위해 우리 구를 떠나는 구민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조치 필요

2. 주요내용

- 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에 있어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%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, 국·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로 지원하는 경비는 자치구세 3%범위내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제17025호)

나. 예산조치 : 혁신선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(6억)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입법예고(2006. 1.19 ~ 2006. 1. 31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
“자치구세의 3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·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
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<u>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한)의 3%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<u>자치구세의 3%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·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</u></p>